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514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나5149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10144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심당사자A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변론 종결 2021. 3. 25.

판결 선고 2021. 4. 2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14. 선고 2019가단10144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2015. 10.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3. 10. 접수 제15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0행, 제1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E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5, 7,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피고나 피고의 후견인이었던 Q의 사해의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이고, 피고나 피고의 후견인이었던 Q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분할협의를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고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의 배우자 Q는 1997. 8. 7. 피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다만,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금치산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② 피고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L을 거쳐 최종적으로 망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경위와 관련된 피고의 위 진술에다 Q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피고의 부친 N과 망인을 부양하여 왔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소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Q는 피고의 채무인수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⑤ E는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피고와 함께 거주하지 않아 Q는 E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서민아

판사석동우

별지